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7. 2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7. 16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7. 16 (제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. 건설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농업정책과장 김 중 철
- 나. 개정사유
 - 행정 절차법이 '98. 1. 1일 부터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 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 하고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조례 제1510호(1997. 7. 8)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제13조 (의견진술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언태)

- 동 조례중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개정 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‘생 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 략’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13조 (의견진술) 조례 제11조 제1항에</p> <p>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</p> <p>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</p> <p>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</p> <p>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</p> <p>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</p> <p>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(삭 제)</p>				